



본회 '89년도 정기총회 개최

—당분간 가입비는 유보, 정기회비는 규모별 차등 징수키로—



본회 '8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22일(수) 오후3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원선출이 없어 대체적으로 '88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예산집행결산 보고 및 '89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본회 규정일부개정(안)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개정된 내용은 본회 가입시 가입비(입회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회원 신규가입이 어렵다는 여론을 수렴, 가입비 징수를 당분간 유보하고 대신 부족재원충당을 위해 정기회비를 규모별로 차등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태원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양계인들의 단결된 힘을 모체로 모든 정력을 다마쳐 국산옥수수배정문제 및 부가가치세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회를 더욱 강력한 생산자 단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세분화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타당성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수용 전문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빈을 대표하여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이인형 과장은 “과거부터 양계산업은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발전하는데 상당히 지해를 받았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양계농가와 협회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체는 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계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및 단체에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농림수산부장관표창〉

- 이계욱 사장(본회 이사, 천호부회장)

〈감사패〉

- 이희택 사장(제일사료(주))
- 양경덕 차장(〈주〉과학축산)
- 정규현 사장(서부배합사료(주))
- 강태현 사장(중앙축산사료(주))
- 이병수 사장(〈주〉대군통상)

- 배선채 사장(〈주〉중원농장)
- 배성환 사장(〈주〉삼화농원)
- 김 현 사장(발안농장)
- 이형성 사장(기류농원)
- 이학복 사장(성일농장)
- 정연탁 계장(거제군 축산계)

〈공로패〉

- 이기동 사장(전북지부 운영위원)
- 신극남 사장(전남지부 채관분과 위원장)
- 이장형 사장(경북지부 육계분과 위원)
- 하성환 사장(부산·경남지부 육계분과위원)
- 최준구 사장(본회이사, 삼우농원)
- 용인분회

정기총회 폐회후 본회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 리셉션을 함께 개최하였다.

본회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

- 1986.2.2 제정
- 1987.2.26 개정
- 1989.2.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와 제9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및 회비와 제사업 수수료, 찬조금, 기타 수입 등 제수입금의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납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종류)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부과징수근거
회원의 정기회비	입 회 금	본회 회원가입시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
	일반회비	정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이 납입할 정기회비
	단체회비	정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회원이 납입할 정기회비
	특별회비	정관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회원이 납입할 정기회비
기타회비(제수입금)	구독회비	각종 간행물의 구독회비
	연수회비	기술지도강습회, 세미나등의 각종 연수회 참가자의 부담금

검정회비	축산법에 의한 종계일반 검정수수료 및 능력검정 출품료
시험회비	각종 시험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비용
알선회비	자제 약품 등의 알선수수료
광고회비	각종 간행물의 광고의뢰자가 납부하는 광고료
찬조회비	각종 사업 수행시 납부되는 협찬금
기타회비(기타수입금)	기타 제수입

제3조(회비의 결정) (1)새로 가입하는 회원의 입회금은 본회가 입시 정액제로 하되 별표"1"과 같다.

(2)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할 정기회비는 양계업 경영 규모에 따른 정액제로하되 별표"2"와 같다.

(3)제2조의 제수입금중 검정회비는 회장이 이를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검정회비를 제외한 기타회비(제수입금)는 사업 시기별로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회비의 부과 및 납부징수) (1)새로이 가입하는 회원의 입회금은 본회 가입신청서 제출과 동시 자진 납부 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정기회비는 매회계년도 정기총회 개최후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부 또는 분회에 소속된 회원은 지부장 또는 분회장이 징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회비(제수입금)는 매사업 시행시 회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5조(지부지원금) 회장은 지부 또는 분회를 통하여 납입되는 회비중, 정기회비, 종계일반검정회비의 일부를 다음 비율에 의거 지부 또는 분회에 보조할 수 있다.

지부 또는 분회의 보조금 지급비율

구 분	정기회비	광고회비	종계일반검정회비
보조비율	50%이내	30%이내	20%이내

제6조(회비의 면제)본회 고문에 대한 정기회비는 이를 면제한다.

제7조(규정의 적용)회비 및 기타회비(제수입금)의 부과

회원의 정기회비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금액단위: 원)

규모별	10,000수 미만	10,000수 ~30,000수 수미만	30,000수 ~50,000수 수미만	50,000수 ~70,000수 수미만	70,000수 ~90,000수 수미만	90,000수 ~110,000수 수미만	110,000수 ~130,000수 수미만	130,000수 ~150,000수 수미만	150,000수 ~170,000수 수미만	170,000수 ~190,000수 수미만	190,000수 ~210,000수 수미만	적 요
금 액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만수 규모이상은 2만수 초과당 1만원씩 가산

신가입회원 입회금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금액단위: 원)

구분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적요
금액	1인당 30,000	1단체당 100,000	1인당 15,000	

징수에 관한 업무중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예산회계 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례를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1983년 3월1일 제정한 회비징수 규정은 본 규정 시행

일로부터 이를 폐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1989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시행유보) 제3조 제1항 규정은 별도 총회의 결의가 있을때까지 1989년1월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을 유보한다.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춘계 심포지움 개최

—지난 2월24일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통구조를 원활하게 개선하여 채란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2월 24일(금)분회와 한국가금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국사료곡물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정기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채란업자 및 계란가공, 유통의 관련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강사로 나온 C.아놀드(미국계란유통전문가)씨는 주로 미국의 계란유통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등급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발표된 내용중 등급체계의 중요점 3가지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확한 의사전달, △생산자 활동 전문화 및 교류 일상화, △영업활동 및 유통체계 명확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대 지규만교수는 「우리나라 계란의 유통규격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중량별등급표를 보면 산란율에 비추어 특란및 대란의 등급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등급간도 세분화하여 유통을 시켜 우수한 상품에 대한 값의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생산자측은 그와 같은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우리나라 유통구조상 자칫 홀란이 야기되어 생산자에게 불리한 여건만 만들어줄 소지가 있어 당분간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88년부터 만연되어 양계산업에 일대 타격

을 가한 닭뉴캐슬병(ND)에 대한 88년도 발생상황분석에 대하여 서울대학 수의대 교수인 김선중박사가 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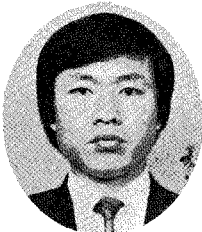
발표내용은 △미국계란의 표준화 및 유통—C. 아놀드, △우리나라 계란의 유통규격개선—지규만교수, △88년 뉴캐슬병(ND)발생 상황분석—김선중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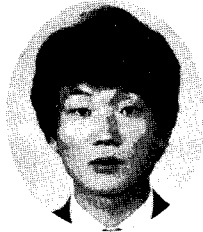
본회 직원 승진인사 발령

본회는 3월 1일부로 직원의 승진인사를 발령했다.

- 강재명 과장
- 김용화 과장대리



▲강재명 과장



▲김용화 대리

양계질병 대책 및 계란유통 지방 순회강습회

—천안, 전주, 부산, 영주 4개지역에서 실시—

본회가 주관한 「양계질병대책 및 계란유통 순회강습회」가 지난 2월23일(목)천안을 필두로 하여 전주(2월27일), 부산(2월28일), 영주(3월2일)지역에서 미국 사료곡물협회의 후원으로 실시되었다.

강사로는 C. 아놀드씨가 「미국계란의 표준화 및 유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질병강의는 천안, 전주, 영주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김기석박사가, 부산에서는 금성사료 기술연구소 장기식소장이 각각 맡

아 「뉴캐슬병 발병 대책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였다.

본 강습회는 바이엘화학,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녹십자, 대성미생물, 한국미생물, 양지화학에서 협찬하였다.

행사결과

지 역	일 시	장 소
중부·충청	2.23(목) 14:00	천안축협
서울·경기	2.24(금) 10:00	축산회관
전남·전북	2.27(월) 15:00	대륙예식장
부산·경남	2.28(화) 15:00	부산·경남지부
경 북	3.2(목) 10:00	영주축협

KBS-1 TV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방영 관련 항의서 제출

—본회 및 축산관련 9개 단체공동 대처키로—

소위 TV 방영 황금시간대라 일컫는 오후8~10시 사이에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한개인의 일방적인 영양에 대한 주장이 방영됨으로 인해서 일대 축산물소비가 위축을 받아 축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방영한 주취측인 KBS-1TV(한국방송공사)사장에게 직접 본회 및 축산관련9개 단체가 방영의 편파성을 제기하는 항의서를 89년 2월25일 전달하였다.

항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계제)

1.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 최근에 귀 공사에서 특별기획으로 방영한바 있는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 (89.2.16-2.17)”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건강법을 알려주는 하였으나 영양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구 박사의 건강법을 따랐을때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우리나라와는 식생활 패턴이 전혀 다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위마의 모든것”이라는 프로에서 보면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증 환자들이며 그들의 치료에는 채식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추측되나 KBS 시청자인 우리 국민들은 비만증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식생활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흔히 병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병자로 보이고 교도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로 보이듯이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측면에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의 식생활을 환자의 식생활과 같이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은 덮어놓고 건강에 나쁜 것이고 채식만이 좋다는 이상구 박사의 주장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너무나 편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84년도에 출간된 유태중, 채범석 교수의 공동저서인 “지금의 식생활로는 일찍 죽는다”라는 책자에서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바람직한 단백질, 지방질, 당질(탄수화물)의 비율은 11~12% : 20~25% : 63~69% 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율은 13.0 : 11.1 : 75.9% 이고 미국은 11.7 : 41.9 : 46.4% 되어 있는 바 이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방질을 배이상 더 섭취하여야 하며 미국인은 반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식생활 구조와 문화권이 다르므로 미국인의 건강식과 한국인의 건강식은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저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인의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1일 1인당 단백질 섭취량은 대략 70g 으로서 한국인 평균 권장량에 부족되지 않으나 이중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단백질은 22.5g 으로서 전체 단백질의 32.2%에 불과하여 일본은 총 단백질 78.8g 중 40g 를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므로 그 비율은 50% 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 것입니다.

4. 86년도에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단지

침을 보더라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여야 하는데 육류, 어류,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은 아미노산의 균형이 매우 우수하며 식품성 식품에 부족한 아미노산의 보완기능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식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고, 지방질도 총 열량의 20% 정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1.4% 밖에 섭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우유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의 한국인 영양권장량에도 일정 비율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유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7배이상, 돼지고기는 약 3배, 닭고기는 8배이상, 쇠고기는 9배, 계란은 1.4배를 먹고 있음을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동물성 식품을 더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특히 우유는 필요없는 음식이다. 우유는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쏘세이지는 자투리로 만들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극언을 서슴치 않고 있음은 이상구 박사가 비록 종교적으로 채식주의자에 속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악의적으로 동물성식품을 비방하는 것이며, 과연 이상구박사의 주장대로 채식만 할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에 미치는 영양 결핍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이상구 박사의 강연이 우리나라의 고구마를 동나게 하였다는 이상구 박사 본인의 말대로 엄청난 반응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때 귀 공사에서는 이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였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축산관계 생산자들의 협회및 조합을 비롯하여 축산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축산관련협의회에서는 이를 강력히 항의하오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이상구 박사의 프로가 방영될시 이는 이상구 박사의 개인의 견이며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사전 통보하여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
2. 적어도 4회이상 이상구 박사의 프로가 방영된 동일 시간대에서 영양학자들의 좌담회를 통하여 이상구 박사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실 것.

1989. 2. 25.

한국축산단체협의회 회장 전동용

한국낙농우유협회 회장 황영구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대한양계협회 회장 정태원

한국중축개량협회 회장 송찬원
 한국사료협회 회장 김주호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죽송
 대한수의사회 회장 장창국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서태수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김복용
 한국육가공협회 회장 강진우

법인전환절차 해설 및 세무강좌 개최

—지난 2월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2월27(월) 본회가 주관한 법인전환절차 해설 및 세무강좌(강사 김익래)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양계업자가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입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방지함과 동시에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양계업계(종계, 부화, 채란, 육계 기타 관련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강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제도적비교, △법인전환절차, △법인전환시 현행법상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범위 및 세제지원, △소득세 계산절차 및 결정방법을 주제로 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김익래공회계사는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조세부담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할 때 법인전환완료업체중 25.7%,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체중 44.4%가 세무상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사례를 들어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강의내용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질의 회신

—본회 판매시세통보 공정거래법상 하자 없어—

최근 생산자 단체에서 계란상인연합회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제소함에 따라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계산물의 시세정보를 회원들에게 업서 또는 전화통지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또는 대한양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단체개념에 포함되므로 시세고시를 할 수가 없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려 생산자들을 혼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난 1월30일 본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2월17일자로 받았다.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양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 축산업은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업자들의 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한양계협회가 양계산물의 매일의 판매시세를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한양계협회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 협회의 회원들에 대한 판매시세 통보행위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계업자 대표와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양계산물의 농장수취 기준가격을 양계업자들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계산물 도·소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동 행위를 하는 것은 도·소매업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양계업자 대표와 상인연합회가 양계산물의 농장수취 기준가격을 상호협의 각각의 회원들에게 통보할 경우 상인연합대표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부

당한 공동행위)또는 제1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이 된다.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대책 협의회 개최

— KBS-1 TV에 강력한 대응책 요구키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이란 KBS-TV 프로그램의 여파로 축산물 소비의 감소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축산의 안정적 발전이 우려되어 축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의 대책 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3월3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상구의 이론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내용을 방영한 KBS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상구 개인이론에 대해서는 반박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방송을 한 KBS는 공동으로 항의하여 사과발표와 골든아워시간대에 몇차례에 걸쳐 반대방송을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시청료거부운동 등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근거가 없는 방송을 방영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KBS를 방송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또한 소비가 위축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의학, 영양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박홍보를 하기로 했다.

'89 제1차 이사회 개최

금년도 제1차 이사회가 지난 2월22일(수)오전12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축산회관 이전으로 본회 사무실을 옮긴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는 주로 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심의한 후 정태원회장으로부터 협회운영 방침을 보고 받



은후 새로운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따른 예산부족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 및 부의안건을 보면 △협회주도업무추진 상황보고, △감사보고, △'88사업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결산 보고, △규정일부개정(안)심의 등이었다.

채란분과 위원회 개최

—전국계우회연합회와 연석으로—

난가회복으로 인한 채란산업의 호황속에 개최된 본회 채란분과 위원회(위원장 심준식)가 지난 2월10일(금)분회 회의실에서 전국계우회연합회 월례회와 연석으로 개최하였다.

비교적 채란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결집시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취지아래 모인 이번 회의는 매우 진지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특히 생산량 감소로 인한 난가회복기에 접어들어 계란가격고시를 생산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는 협회 채란분과 및 계우회연합회가 힘을 합해 채란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였다.

2월 육계분과 위원회

설날 이후 급격한 소비감소로 육계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2월 육계분과 위원회 월계회(위원장 장민기)가 지난 2월27일(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중·남부 지역의 육계가격이 하이700원, 세미800원, 추대가 250~360원선을 보이므로써 그간 호황을 유지해왔던 육계산업에 다소 불황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장기간 높은 시세유지로 입추과열, △질 좋은 수입육의 무제한 방출로 육계소비둔화, △이상구프로의 여파로 분석하였다.

이날 합의 사항은 KBS 담당 P. D에게 방영의 편파성을 직접 위원들이 항의전화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화여대 가정대학장 김숙희교수에게 반대이론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다.

월례회 후 본회가 실시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절차 및 세무강좌」를 수강하였다.

본회 사무실 이전 비품협찬 현황

—우수한 환경 갖춰 업무활성화 기대—

축산회관 이전 관계로 본회사무실을 옮기게 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한 업무용 비품구입에 많은 양계인들의 협찬이 있어 회원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층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미 지난 88년12월29일에 이전을 하였으며 그간 사무실 정리에 착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집기배치를 완료하고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비품협찬자 명단

정태원 회장, 신흥종 부회장, 한순 부회장, 장민기 부회장, 김현 이사, 이학복 이사, 배성환 감사, 강석부 이사, 함명복 이사, 부산·경남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 경북지부, 이천분회, 포천분회, 용인분회, 천안분회, 동두천분회, 육계분화 위원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전국계우회연합회,

종우회, 서울사료, 무지개사료 안성대리점, 대지, 해외병아리감별학원, 동남하우스축산, 영진농장, 이천축산, 신촌사료, 서부배합사료, 선진축산, 과학시스템, 퓨리나코리아, 대한특수기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창동부화장, 태을물산, 강남부화장, 대성미생물연구소, 부천축협(박동래), 화천산업(최진우), 봉림축산, 세이메이양계, 도후찌, 마에다양계장.

VIV - ASIA 전시회 참관 및 일본 육계 계열화산업 시찰단모집

— 도쿄 하루미에서, 4월11일~14일까지 —

이번이 제2회로 열리게 되는 VIV - ASIA 축산기술 전시회가 오는 4월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 하루미에서 개최된다.

전시분야로는 양계 및 양돈, 낙농 및 육우 산업의 기자재 및 종축, 농장체계가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회 기간동안에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양계산업의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양계인들에게 안목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전시회 참관 및 일본 육계계열화산업을 시찰할 시찰단을 본회에서 모집하고 있다.

참관 및 시찰 일정

1. 단체명 : VIV 전시회 참관단 및 계열농장 시찰단
2. 기간 : 89년4월10~15일(예정)
3. 방문지 : 서울-동경-나라·쿄토-큐슈-오사카-서울(W950,000개산불 추후확정)
4. 참가신청기간 : '89년 3월30일까지
5. 연락처 : 본회 편집국(☎588-7651~4)

대한양계협회 FAX 설치

(02) 588-7655